포 항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729호 2009. 5. 19(화)

선람	기 관 의 장

포 항 시

◀ 조 례 ▶

ㅇ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39호)…… 2

ㅇ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33호) …… 4

ㅇ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34호) …… 7

ㅇ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35호) …… 43

ㅇ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제936호)…… 47

ㅇ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37호)…… 51

ㅇ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38호) …… 55

◀ 훈 령 ▶

ㅇ포항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214호) …… 72

◀ 공 고 ▶

ㅇ第155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제4호) …… 75

회람								

발행 : 포항시 편집 : 공보담당관(☎270-2234) 190×268 신문용지 70g/m2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939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분뇨의 처리의무) ①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구역 안의 오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내부 청소시에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니농축조, 농축오니저류조 및 침전조의 오니를 전량 제거하여 탈수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 및 침전물을 전량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거나, 밀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삭 제〉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933호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농축산과 란에 제3호 부터 제7호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 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축산과	3.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신고 등 나. 행정처분 다. 시설개수명령 4. 위반축산물 압류·폐기 또는 회수조치 명령 5. 신고업소 폐쇄조치 6. 동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동물판매업등록 나. 등록의 취소 등 다. 행정처분 7. 동물의 적정한 관리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6호 동법 제27조제1항 동법 제35조 동법 제36조1항 동법 제38조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5조제1항, 제2항 동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환 경 위생과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6층이하 건축물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마. 과태료 부과징수 8.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하수도법 제34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80조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거법령
농축산과	1. ~ 2.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환경위생과	1. ~ 6. (생 략)	(생 략)
	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단. 6층 이하 건축물 중 건축 연면적 2,000㎡ 이하)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및 청소명령	

개 정 안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건 명	근거법령
농축산과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신고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나. 행정처분	
	다. 시설개수명령	동법 제27조제1항
	4. 위반 축산물 압류·폐기 또는 회수조치 명령	동법 제35조
	5. 신고업소 폐쇄조치	동법 제36조제1항
	6. 동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동법 제38조
	가. 동물판매업 등록	동물보호법 제15조
	나. 등록의 취소 등	동법 제21조
	다. 행정처분	동법 제25조제1항
	7. 동물의 적정한 관리유지에 관한 행정처분	동법 제25조제2항 동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환경위생과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하수도법 제34조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동법 제37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동법 제39조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동법 제40조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동법 제80조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8.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934호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1호·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 한다

1. 휴지통, 벤치
2. 기타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공공시설물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 관련 홍보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홍보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 할 수 없다.
2.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할 때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역특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제4항”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제4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법 시행일(공포한 날)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별표 2의 가. 일반 옥외광고물, 별표 5, 별지 제7호의2,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10호, 별지 제1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시지역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3,000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 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20제곱미터 이하	30,000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2,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15,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나.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시지역
5.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5,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시지역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3,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7,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 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30만원 +15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33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67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8만원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5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5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5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장당17천원
- 11~20장 이하		장당25천원
- 21장 이상		장당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장당25천원
- 11~20장 이하		장당33천원
- 21장 이상		장당50천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장당8천원
- 11~20장 이하		장당17천원
- 21장 이상		장당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장당25천원
- 11~20장 이하		장당33천원
- 21장 이상		장당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나. 30일이상 90일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67만원
다. 90일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17만원
라. 180일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7만원
마.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50만원이 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시지역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 2서식 】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예시(제33조의2 관련)

【별지 제7호의 3서식 】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33조의2 관련)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2009’ 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 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별지 제10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제 호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td><td>처리기간
3 일</td></tr>
<tr><td rowspan="3">신청자</td><td>① 성 명</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③ 업 소 명</td><td></td><td>④전 화 번 호</td><td></td></tr>
<tr><td>⑤ 주 소</td><td></td><td>⑥신 고 번 호</td><td></td></tr>
<tr><td colspan="2">⑦재교부 신청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포항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없음</td><td>수 수 료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td></tr>
</table>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번호	②일시	③허가·신고번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비고
			④성명	⑤업소명	⑥전화번호	⑦주소	⑧종류	⑨수량	⑩규격	⑪광고내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이라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 ----------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 -- 1. 휴지통, 벤치 2. 기타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삭제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③ 생략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 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 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신 설〉	제19조의2(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구법 제3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현 행	개 정 안
	불구하고 특화사업 관련 홍보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홍보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 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할 때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② 지역특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 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 행	개 정 안
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4 현행과 같음 5. ---------- --영 제33조제8항의 ---------- ----------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 ---------- ---------- ---------- ---------- ---------- ----------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략 〈신 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 제4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신 설〉	제33조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는 “실명제 표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

현 행	개 정 안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공포한 날)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 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

현 행	개 정 안
	시 지역, 도심지역 등 2. 기타 전지역
〈신 설〉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 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34조 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구분 / 광고물의종류	단위	기 준	시지역	구분 / 광고물의종류	단위	기 준	시지역
1.가로형간판				1.가로형간판			
가.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가.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나.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제15조제4호)	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2.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2.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	15,000 1,000 4,000	3.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 이하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	15,000 1,000 4,000
4.공연간판				4.공연간판			
가.벽면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가항과 같음		가.벽면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가항과 같음	
나.지우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나.지우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5.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6.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애드벌룬				7.애드벌룬			
가.공중에 뛰우는 것	개		15,000	가.공중에 뛰우는 것	개		15,000
나.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나.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지면에설치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다.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8.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8.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일반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가.일반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 이하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전주·가로등주	개	·10개 이하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나.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9.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 이하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현 행

구분 / 광고물의종류	단위	기 준	시지역
10.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비행선	대		400,000
나.비행기·선박양측면	대		0
다.차량 양측면	대		10,000
11.선전탑	개		2,000
12.아취광고물	개		4,000
13.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현수막			4,000
가.현수막	개	·10제곱미터 이하	3,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현수막 게시시설	개	·10제곱미터 이하	7,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15.벽보	매	·50매당	3,000
16.전단	매	·1,000매당	3,000
17.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개 정 안

구분 / 광고물의종류	단위	기 준	시지역
10.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비행선	대		400,000
나.비행기·선박양측면	대		0
다.차량 양측면	대		10,000
11.선전탑	개		2,000
12.아취광고물	개		4,000
13.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현수막			4,000
가.현수막	개	·10제곱미터 이하	3,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현수막 게시시설	개	·10제곱미터 이하	7,000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15.벽보	매	·50매당	3,000
16.전단	매	·1,000매당	3,000
17.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 제1항 관련)

현 행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1.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입간판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연면적1제곱미터 미만	·5만원이상20만원미만	
-0.5제곱미터 이하		
-06.~0.8제곱미터이하		8만원
-0.9~1.0제곱미터미만		13만원
(나)연면적1제곱미터 이상2제곱미터미만	·20만원이상40만원미만	19만원
-1.0~1.3제곱미터이하		
-1.4~1.6제곱미터이하		25만원
-1.7~2.0제곱미터미만		30만원
(다)연면적2제곱미터 이상3제곱미터미만	·40만원이상80만원미만	39만원
-2.0~2.3제곱미터이하		
-2.4~2.6제곱미터이하		45만원
-2.7~3.0제곱미터미만		60만원
(라)연면적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3제곱미터초과면적의0.5제고미터당10만원을 가산한 금액	79만원 80만원 +10만원
(2)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연면적1제곱미터 미만	·3만원이상10만원미만	
-0.5제곱미터 이하		5만원
-0.6~0.8제곱미터이하		7만원
-0.9~1.0제곱미터미만		9만원
(나)연면적1제곱미터 이상2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1.0~1.3제곱미터이하		15만원
-1.4~1.6제곱미터이하		20만원
-1.7~2.0제곱미터미만		29만원
(다)연면적2제곱미터 이상3제곱미터미만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2.0~2.3제곱미터이하		35만원
-2.4~2.6제곱미터이하		40만원
-2.7~3.0제곱미터미만		49만원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1.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입간판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연면적1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0.5제곱미터 이하		
-06.~0.8제곱미터 이하		13만원
-0.9~1.0제곱미터 미만		22만원
(나)연면적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32만원
-1.0~1.3제곱미터 이하		
-1.4~1.6제곱미터 이하		42만원
-1.7~2.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다)연면적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64만원
-2.0~2.3제곱미터 이하		
-2.4~2.6제곱미터 이하		75만원
-2.7~3.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라)연면적3제곱미터 이상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연면적1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0.6~0.8제곱미터 이하		12만원
-0.9~1.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연면적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1.4~1.6제곱미터 이하		33만원
-1.7~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다)연면적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0~2.3제곱미터 이하		58만원
-2.4~2.6제곱미터 이하		67만원
-2.7~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현 행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라)연 면 적 3 제 곱 미 터 이상	·50만원에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 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5만원
나. 현수막		
(1)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면적 3제곱미터 이하	·5만원이상10만원미만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7만원
-2.1~3.0제곱미터미만		9만원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3.0~3.7제곱미터이하		13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15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19만원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6.0제곱미터이하		25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35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45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10만원
(2)지주·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연면적3제곱미터 미만	·5만원이상10만원미만	
-1.0제곱미터이하		5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7만원
-2.1~3.0제곱미터이하		9만원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3.0~3.7제곱미터이하		13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15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19만원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6.0제곱미터이하		25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35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45만원
(라)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10만원
(3)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라)연 면 적 3 제 곱 미 터 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 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8만원
나. 현수막		
(1)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면적 3제곱미터 이하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1.1~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2.1~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0~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3.8~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4.5~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6.1~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8.1~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5만원
(2)지주·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연면적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1.1~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2.1~3.0제곱미터 이하		14만원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0~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3.8~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4.5~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6.1~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8.1~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연면적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5만원
(3)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현 행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가)면적3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10만원미만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1.1~2.0제곱미터이하		7만원
-2.1~3.0제곱미터미만		9만원
(나)면적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3.0~3.7제곱미터이하		12만원
-3.8~4.4제곱미터이하		15만원
-4.5~5.0제곱미터미만		18만원
(다)면적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6.0제곱미터이하		25만원
-6.1~8.0제곱미터이하		35만원
-8.1~10.0제곱미터미만		45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1제곱미터당 10만원을가산한금액	50만원 +10만원
(4) (1)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장당 5천원이상3만원 이하	
(1)일반 광고내용		
-1~10장이하		장당10천원
-11~20장이하		장당15천원
-21장이상		장당25천원
(2)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이하		장당15천원
-11~20장이하		장당20천원
-21장이상		장당30천원
라. 전단	·장당3천원이상 3만원 이하	
(1)일반 광고내용		
-1~10장이하		장당5천원
-11~20장이하		장당10천원
-21장이상		장당15천원
(2)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이하		장당15천원
-11~20장이하		장당20천원
-21장이상		장당30천원
2.법 제11조제2항에따른 옥외광고업의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관한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가)면적3제곱미터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1.1~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2.1~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면적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0~3.7제곱미터 이하		20만원
-3.8~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4.5~5.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다)면적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6.1~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8.1~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면적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5만원
(4) (1)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일반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17천원
-11~20장 이하		장당25천원
-21장 이상		장당42천원
(2)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25천원
-11~20장 이하		장당33천원
-21장 이상		장당50천원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일반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8천원
-11~20장 이하		장당17천원
-21장 이상		장당25천원
(2)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1~10장 이하		장당25천원
-11~20장 이하		장당33천원
-21장 이상		장당50천원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 행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가. 30일미만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15만원
나. 30일이상90일미만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40만원
다. 90일이상180일미만	·50만원이상100만원마만	70만원
라. 180일이상1년미만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30만원
마. 1년이상	·200만원이상300만원이하	240만원
〈신 설〉		
3.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10만원이상30만원미만	25만원
나. 연2회 위반자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45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50만원이상100만원이하	100만원
〈신 설〉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기 준 금 액	시지역
가. 30일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67만원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17만원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미만	217만원
마.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	400만원
3.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 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만원
나. 연2회 위반자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0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연2회 위반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5.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1회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만원
나. 연2회 위반자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0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자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 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 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백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 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다

(5)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7호의2】**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신 설〉	**【별지 제7호의3】**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 비 고 1. 표시규격 : 가로5㎝×세로5㎝ 2. 표시내용 : ‘200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표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⑥신 고 번 호	
⑦재교부신청 사 유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7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호	② 일시	③ 허가·신고번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고
			④ 성명	⑤ 업소명	⑥ 전화번호	⑦ 주소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광고내용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935호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항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적립금

3. 국·도비 보조금

4.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② 제1항제2호의 적립금에 있어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하며,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936호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농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 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바 에 의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937호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0인 이상 20인” 을 “10명 이상 30명”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3조제3항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10인 이상 20인” 을 “10명 이상 30명”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경제통상과” 를 “사회복지과” 로 하고,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4조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주민 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경제통상과 및 보건소 소속 담당주사 각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 ------10명 이상 30명-----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③ ---------- ---------- ---------- -----1명---------- -----. ④ ----------1명- ---10명 이상 30명-------- ----------. 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사회복지과--------- ---------1명----------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 ----------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조례 제 938호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중 “제115조”를 “제124조”로 한다.

제19조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산림법」 제91조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제4항제1호중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5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61조중 “영 제134조제4항”을 “법 제144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를 “법 제144조”로 한다.

별표4 제2호라목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별표5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다목중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7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제외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별표14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제외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별표20 제1호차목 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도지사 ----------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4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

현 행	개 정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생략)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 8.(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70퍼센트 -- 6. ~ 8.(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생략) ②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 3.(생략)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5. ~ 6.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 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라목 ---------- ---------- ---------- 5.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생략) 3.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생략)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 2. (현행과 같음) 3. ---------- ---------- ---------- ---------- ---------- ---------- 제6조---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144조 ----------**
제6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생략) ③ (생략)	**제6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4조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4】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3호관련)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별표4】**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3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현 행	개 정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 인 것	---------- ---------- --------- -1천제곱미터- ---------- ---------- ---------- ---------- ---------- ---------- ---------- ----------
마. ~ 더. (생략)	마. ~ 더. (현행과 같음)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다. ----------1천제곱미터----------
라. ~ 너. (생략)	라. ~ 너. (현행과 같음)
【별표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6호관련)	**【별표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6호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제외 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 너. (생략)	라. ~ 너. (현행과 같음)
【별표14】	**【별표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3호관련)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3호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

현 행	개 정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제외 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바. ~ 타. (생략)	바.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9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자.(생략)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 되는 「건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9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자.(현행과 같음) 차. ---------- ---------- ---------- ----------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td><td>----------</td></tr>
<tr><td>1) ~ 3) (생략)</td><td>1) ~ 3) (현행과 같음)</td></tr>
<tr><td>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td><td>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td></tr>
</table>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삭 제〉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삭 제〉
	〈삭 제〉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삭 제〉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삭 제〉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삭 제(20119에 합병)〉
	〈삭 제〉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

현 행		개 정	
	제 제조업		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삭 제〉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삭 제〉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삭 제〉
24312	농약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삭 제〉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삭 제〉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삭 제〉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삭 제〉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삭 제〉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삭 제〉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현 행		개 정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삭 제〉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삭 제〉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삭 제〉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삭 제〉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삭 제〉
28922	도금업	25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현 행		개 정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삭 제〉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삭 제〉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삭 제〉
카. ~ 러.(생략)		카. ~ 러.(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훈 령

포항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5월 19일

포항시 훈령 제 214 호

포항시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효율적인 심의 운영과 원활한 추진 및 체계적이고 적정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희망근로사업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희망근로사업의 지침 수립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3.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희망근로사업의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노동부 포항지청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포항시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로 한다.

④ 간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추진 T/F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운영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산업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위원회 운영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 고

포항시의회공고 제 4 호

第155回 浦項市議會(臨時會) 集會公告

地方自治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第155回 浦項市議會(臨時會)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

日時 : 2009年 5月 27日(水曜日) 午前 10時 20分

場所 : 浦項市議會 本會議場

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

2009년 5월 19일